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83
----------	-------

발의연월일 : 2025. 8. 28.

발 의 자 : 이학영 · 김영배 · 강득구
김성환 · 임호선 · 박민규
김기표 · 백선희 · 김주영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기관은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등 요건을 갖춘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그런데 외국인투자지역 내 경매를 통해 토지 등을 낙찰받은 기업이 입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찰받은 토지 등의 처분 또는 사용 절차·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 등을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경우 그 처분 또는 사용 절차·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투자지역 내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토지등을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라 다른 입주기업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3.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 등에 따라 취득한 토지등의 처분 또는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등을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관리) ① ~ ④ (생략)	제18조의3(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⑤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투자지역 내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신 설></u>	<u>⑥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토지 등을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u> <u>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u> <u>다만,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u>

⑤ (생 략)	<u>입주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u> <u>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u> <u>3. 제2호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u> ⑦ (현행과 같음)
----------------	--